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부산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 정원

기관의 이용정원은 노인재가복지시설(주야간보호)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 42명으로 한다.

2. 이용 대상

가. 기관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의 규정에 따라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의 경우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하다.

나. 기관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 가능 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다. 제2항 가목의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한다.

① 결핵검사결과지 1부

② 이용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③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라.기초 수급자인 이용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3. 이용절차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개별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4. 이용자의 모집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홍보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 이용 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의 목적 :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의 기간 :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간 연장이 된다.

3.2025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제15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관련>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1.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 13시간 이하	76,820	91,160	65,750	64,090	62,460	56,36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별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기본 월 15일 이상 이용시 할증액(가족요양 제외)	2,764,190	2,564,320	1,833,840	1,691,640	1,450,680	-

○ **수급자 자격별 복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원)**

구 분	본인부담률
일반	15%
기초 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6%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비급여 항목 비용(원)**

항목	내용	금액	비고
점심 식재료비	기본 1식 제공	3,500	매일 이용료
저녁 식재료비	추가 1식 제공	3,000	토요일 제외 이용료
간식비	기본 2회 제공	1,500	매일 이용료
혈당검사지	매일 측정시 혈당침+검사지	15,000	필요시 매일 제공, 월 이용료
기본 일 5,000원, 월22일 110,000원, 월26일 130,000원		**저녁 추가시 일 8,000원, 월22일 176,000원, 월26일 208,000원)**	

○ **월 이용료(원)**

이용자별 이용료	평일(월22회)			월~토(월26회)		
등급	본인부담률	기본	석식 추가	본인부담률	기본	석식 추가
2등급	15%	323,140	389,140	15%	381,900	459,900
	9%	237,880	303,880	9%	281,140	359,140
	6%	195,250	261,250	6%	230,760	308,760
3등급	15%	306,810	372,810	15%	362,590	440,590
	9%	228,080	294,080	9%	269,550	347,550
	6%	188,720	254,720	6%	223,030	301,030
4등급	15%	301,430	367,430	15%	356,230	434,230
	9%	224,850	290,850	9%	265,740	343,740
	6%	186,570	252,570	6%	220,490	298,490
5등급	15%	295,980	361,980	15%	349,800	427,800
	9%	221,590	287,590	9%	261,880	339,880
	6%	184,390	250,390	6%	217,920	295,920

부산재가주간보호센터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등 으로 통보한 경우 에는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동반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기관의 보험】

1. 보험회사 : KB손해보험
2. 보장내용 :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ㅐ피해 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등